

■ 【별표 16】

설계용역평가 기준(제62조제1항과 관련)

1. 설계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

가. 배점비중

구분		배점	배점비중
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	기본설계	100점	100%
	실시설계	100점	과정평가 40%
		100점	결과평가 60%
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	기본설계	100점	30%
	실시설계	100점	과정평가 30%
		100점	결과평가 40%

나. 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	배점		
대분류	중분류	기본설계	실시설계 (과정)	실시설계 (결과)
A1. 과정에 대한 이해도	A11. 조사준비	10~20	10~30	-
	A12.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			
A2. 효율적인 업무추진	A21. 발주자와의 의사소통	30~40	50~60	-
	A22. 사업추진의 적정성			
	A23.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			
	A24.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			
A3. 참여기술인 적정성	A31.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	10~20	20~30	-
	A32. 참여기술인 투입			
B1. 과업이행 결과 적정성	B11. 설계 성과품	20~30	-	60~70
	B12.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			
B2. 과업이행 내용 충실성	B21. 성능향상 노력도	10~20	-	30~40
	B22.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			
합 계		100	100	100

## 2.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

### 가. 기본설계

평가항목			세부평가기준		
대분류	중분류	정의			
A1. 과정에 대한 이해도	A11. 조사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사전조사·지반조사 및 관련계획 현황조사 충실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A111. 사전조사 충실성 : 기존조사 자료 및 주변현황(지형, 교통, 지장물 등)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		
			A112. 지반조사 충실성 : 구조물과 조사의 부합여부 등 지반상태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		
			A113. 관련계획 현황조사 :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적정성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여부		
	A12.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업과정 전반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 부합성,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준수로 평가할 수 있다. 단, 건축분야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'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'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A121.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: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및 과업수행계획의 충실히 행 여부, 수요기관 자체 지침서 등 준수여부 A122. 관련법규,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 : 설계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등 제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A123. (건축)설계공모 구현을 위한 노력 : 설계공모 대비 기본설계의 주요내용(디자인 개념, 주요자재 사양 등) 구현 노력, 수요기관 자체 지침서 등 준수여부		
A2. 효율적인 업무 추진	A21. 발주자와의 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공적인 용역완수를 위해 발주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노력도 및 협의의 결과 반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주요보고회 등 운영 및 대응노력, 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준수, 협의결과 반영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A211. 주요보고회, 토론회 등의 운영 및 대응 노력 :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된 주요 보고회 및 토론회(착수보고회 등) 개최 및 결과(지적사항 등)에 대한 검토·반영노력 A212. 주요 업무협의 및 보고 일정 준수 : 발주기관과의 적정한 업무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, 관련 보고일정 준수 등 A213. 협의결과에 대한 반영 적정성 :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(지적사항 등)의 설계반영 적정성		
			A22. 사업추진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,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인허가 및 민원, 관련 대관업무 대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A221. 인허가 협의의 적정성 :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 A222. 주요민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 :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문제발생시 민원에 대한 대응 적정성 A223. 대관업무에 대한 대처능력 : 관계행정기관의 질의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
					A23.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
	A24.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추진과정에 포함된 하도급사 및 전문분야와의 충실한 계약이행 및 효율적인 협업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하도급계획 이행의 충실성, 공종별 전문분야와의 협업 및 조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		
			A3. 참여기술인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회의·심의 등 참여 적극성 및 업무처리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공식적인 업무</li> </ul>	A311. 참여기술인 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: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업무 회의 및 심의(설계VE 등), 토론회 등 적극 참여 노력도 A312. 참여기술인 업무처리 노력도 : 참여 기술인의 효

평가항목			세부평가기준
대분류	중분류	정의	
		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및 업무처리 적극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	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성과 노력도
	A32. 참여기술인 투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공적인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참여기술인의 전문성과 참여기술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투입 참여기술인의 관련 지식 및 협업 조정 전문성, 참여기술인 교체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li>단, 질병·퇴사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참여기술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321. 투입 참여기술인 전문성 : 과업내용, 수요기관 요청사항(인허가 포함), 관련법규 및 시공방법 등에 충분한 지식이 확보되고, 전문분야와의 협업·조정 전문성이 확보된 참여기술인 투입 여부</p> <p>A322. 참여기술인 교체 적정성 : 참여기술인 교체 빈도, 경력 및 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참여 기술인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</p>
B1. 과업이행 결과 적정성	B11. 설계 성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수행결과인 설계성과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, 설계도면간 불일치 발생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B111.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오류여부, 설계조건의 명확성, 계산과정 등의 명확한 수록 여부</p> <p>B112. 설계도면간 내용 불일치 발생여부 : 위치도 및 종·평면도 등 도면의 적정성, 구조계산 결과의 정확한 반영 여부 등</p>
	B12. 성과품 오류 수정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준공의 결과인 성과품 내 오류에 대한 대처 적극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성과품 오류 문제 확인, 오류에 대한 수정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B121. 기본설계성과품 오류로 인한 문제 확인 : 기본설계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 여부</p> <p>B122. 오류에 대한 수정 적정성 :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적합한 수정여부</p>
B2. 과업이행 내용 충실성	B21. 성능향상 노력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과품의 품질 향상 및 성능확보를 위한 용역수행업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, VE·기술심의 결과 반영 적정성, 신기술·신공법 검토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B211.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: 구조형식의 적정성(경제성, 시공성, 안전성, 경관 등) 및 비교안의 검토여부 등</p> <p>B212. 기본설계VE, 기술심의 등 결과반영 적정성 :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(기본설계 VE, 기술심의 등)의 결과에 대한 조치 적극성 및 반영 여부</p> <p>B213. 신기술·신공법 적용에 따른 품질향상 노력 : 공사비 절감,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제고 등을 위한 신기술·신공법 검토</p> <p>B214. 친환경 설계 적용여부 :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적 설계요소 검토</p>
	B22.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추진내용이 효율적인 공사관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공사비 준수 여부,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li>단, 공사비 준수 여부 평가시 수요기관의 요청, 민·관원 등 기타요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li> </ul>	<p>B221. 공사비 준수 : 목표공사비(건축) 또는 기획단계 공사비(토목) 대비 설계완료시점에서 산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</p> <p>B222.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: 특수재료 포함 주요 자재의 조건 타당성 및 주요 투입장비의 가용성 등의 검토 결과 적정성</p>

-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중분류의 정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(우수 1.0, 양호 0.9, 보통 0.8, 미흡 0.7, 불량 0.6)의 가중치로 평가한다.

## 나. 실시설계 과정평가

평가항목		정의	세부평가기준
대분류	중분류		
A1. 과정에 대한 이해도	A11. 조사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사전조사·지반조사 및 관련계획 현황조사 충실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111. 사전조사 충실성 : 기존조사 자료 및 주변현황(지형, 교통, 지장물 등)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</p> <p>A112. 지반조사 충실성 : 구조물과 조사의 부합여부 등 지반상태에 대한 충실한 검토여부</p> <p>A113. 관련계획 현황조사 : 관련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적정성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여부</p>
	A12.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업과정 전반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 부합성,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준수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121. 과업지시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: 과업지시서 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및 과업수행계획의 충실히 이행 여부, 수요기관 자체 지침서 등 준수여부</p> <p>A122. 관련법규,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 : 설계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등 제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</p>
A2. 효율적인 업무 추진	A21. 발주자와의 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공적인 용역 완수를 위해 발주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노력도 및 협의의 결과 반영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주요보고회 등 운영 및 대응노력, 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준수, 협의결과 반영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211. 주요보고회, 토론회 등의 운영 및 대응 노력 :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된 주요 보고회 및 토론회(착수보고회 등) 개최 및 결과(지적사항 등)에 대한 검토·반영노력</p> <p>A212. 주요 업무협의 및 보고 일정준수 : 발주기관과의 적정한 업무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, 관련 보고일정 준수 등</p> <p>A213. 협의결과에 대한 반영 적정성 :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(지적사항 등)의 설계반영 적정성</p>
	A22. 사업추진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지연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,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인허가 및 민원, 관련 대관업무 대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221. 인허가 협의의 적정성 :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</p> <p>A222. 주요민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 :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문제발생시 민원에 대한 대응 적정성</p> <p>A223. 대관업무에 대한 대처능력 : 관계행정기관의 질의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</p>
	A23.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설계 단계별 일정준수 노력도, 과업기간 지체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li>○ 단, 과업기간 지체여부의 평가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체일정은 제외한 후 평가한다.</li> </ul>	<p>A231. 단계별 설계일정 준수 노력도 : 설계단계별 일정(자문, 심의, 설계VE, 성과품 제출 등) 및 보고·지시사항 요구기한 준수 노력</p> <p>A232. 과업기간 지체여부 : 과업기간 대비 실제 업무기간의 지체여부</p>
	A24.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추진과정에 포함된 하도급사 및 전문분야와의 충실한 계약이행 및 효율적인 협업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하도급계획 이행의 충실성, 공종별 전문분야와의 협업 및 조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A241.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: 하도급계획의 충실히 이행 여부 및 계약의 적정성</p> <p>A242. 공종별 전문분야 협업 및 조정 : 공종별 전문분야와의 효율적인 협업 노력 및 계약 현황 등</p>
A3. 참여기술인	A31. 참여기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회의·심의 등 참</li> </ul>	A311. 참여기술인 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: 참여기술인의 공식적인 업무 회의 및 심의(설계VE 등),

평가항목			세부평가기준
대분류	중분류	정의	
적정성	참여도 및 노력도	여 적극성 및 업무처리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공식적인 업무 회의 및 심의 등 참여도 및 업무처리 적극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	토론회 등 적극 참여 노력도 <b>A312.</b> 참여기술인 업무처리 노력도 : 참여 기술인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성과 노력도
	<b>A32.</b> 참여기술인 투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공적인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참여 기술인의 전문성과 참여기술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투입 참여기술인의 관련 지식 및 협업 조정 전문성, 참여기술인 교체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li>단, 질병·퇴사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참여 기술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b>A321.</b> 투입 참여기술인 전문성 : 과업내용, 수요기관 요청사항(인허가 포함), 관련법규 및 시공방법 등에 충분한 지식이 확보되고, 전문분야와의 협업·조정 전문성이 확보된 참여기술인 투입 여부 <b>A322.</b> 참여기술인 교체 적정성 : 참여기술인 교체 빈도, 경력 및 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참여 기술인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

1.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중분류의 정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(우수 1.0, 양호 0.9, 보통 0.8, 미흡 0.7, 불량 0.6)의 가중치로 평가한다.

#### 다. 실시설계 결과평가

평가항목			세부평가기준
대분류	중분류	정의	
B1. 과업이행 결과 적정성	B11. 설계 성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수행결과인 설계성과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, 구조 및 수리계산서·공사시방서·설계예산서·수량산출서·전문분야 성과품의 적정성, 설계도면 및 설계도서간 내용 불일치 발생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b>B111.</b>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오류여부, 설계조건의 명확성, 계산과정 등의 명확한 수록 여부 <b>B112.</b> 설계도면간 내용 불일치 발생 여부 : 위치도 및 종·평면도 등과 구조계산서, 시공상세도면 등과의 내용 불일치 여부 <b>B113.</b> 공사시방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설계도면, 구조계산서 등에 부합되는 설계 및 공사사항 반영 적정성, 시방서 내 공종별 규정사항 기술 여부 등 <b>B114.</b> 설계예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품셈기준, 단가(수량)산출서, 관급자재 등의 구성 적정성 및 일치성 <b>B115.</b> 수량산출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: 수량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오기여부 등 <b>B116.</b> 설계도서간 내용 불일치 발생 여부 : 설계도면, 수량내역서, 시방서 등 설계도서간 내용 불일치 여부 <b>B117.</b> 전문분야 성과품 적정성 : 전문분야(기계, 조경, 구조설계, 견적 등) 성과품 품질의 적정성
	B12. 성과품 오류 수정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역준공의 결과인 성과품 내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설계오류에 대한 AS 적극도 및 후속업무 지원 노력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b>B121.</b> 설계오류 AS 대응 적정성 : 시공단계에서 검토되는 실시설계 성과품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업체의 AS 대응 적정성 <b>B122.</b> 후속업무 지원 노력도 :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, 시공업체 등의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업체의 지원 노력, 후속업무 참여 기술인 투입 적정성 등
B2. 과업이행 내용 충실성	B21. 성능향상 노력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과품의 품질 향상 및 성능확보를 위한 용역수행업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, VE·기술심의 결과 반영 적정성, 신기술·신공법 검토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/ul>	<b>B211.</b>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: 구조형식의 적정성(경제성, 시공성, 안전성, 경관 등) 및 비교안의 검토여부 등 <b>B212.</b> 실시설계VE, 기술심의 등 결과 반영 적정성 :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(실시설계 VE, 기술심의 등)의 결과에 대한 조치 적극성 및 반영 여부

평가항목			세부평가기준
대분류	중분류	정의	
			B213. 신기술·신공법 적용에 따른 품질향상 노력 : 공사비 절감,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제고 등을 위한 신기술·신공법 검토
			B214. 친환경 설계 적용 여부 :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적 설계요소 검토
B215.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대책 적정성 :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의 적정성			
	B22.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용역추진내용이 효율적인 공사관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, 공사기간 및 공사비 준수 여부, 설계안전성(DFS) 검토결과와 적정성,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.</li> <li>◦ 단, 공사비 준수 여부 평가시 수요기관의 요청, 민·관원 등 기타요인에 따라 변경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li> </ul>	B221. 공사비 준수 : 목표공사비(건축) 또는 기본설계 단계 공사비(토목) 대비 설계완료시점에서 산정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 B222.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용성 : 특수재료 포함 주요 자재의 조건 타당성 및 주요 투입장비의 가용성 등의 검토 결과 적정성 B223. 설계 안전성 확보 :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내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책 수립 노력도(DFS)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회의 준비 충실성 및 결과(지적사항 등) 반영의 적정성 등 B224. 공정 및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: 주요일정계획(마일스톤) 수립 및 공기산정 근거의 적정성, 공정 계획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의 적정성 등

1.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중분류의 정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5단계(우수 1.0, 양호 0.9, 보통 0.8, 미흡 0.7, 불량 0.6)의 가중치로 평가한다.